거창군
Geochang County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666호 2018. 10. 10.(수)

선결	기관의 장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8-120호 도로명주소 고시 ····· 3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8-1170호 거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예고문) ····· 4
거창군 공고 제2018-1189호 『가조 살피재 굴곡도로 정비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 12
거창군 공고 제2018-1195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12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 ··· 16
거창군 공고 제2018-1225호 위천 수승대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공고 ····· 18

회 람									

발행 : 거창군 / 편집 : 기획감사실 (055-940-3043, 행정 3043)

거창군 고시 제2018 - 120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0. 10.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공수들6길 9

○ 폐지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기리1길 64 등 7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실(☎055-940-3311~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 1부. 끝.

거창군 공고 제2018 - 1170호

거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거 창 군 수

1. 제정이유

가. 군민 개개인이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재정적 근거 마련 필요

나. 일자리 종합대책의 정책대상을 전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제도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 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

나.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

-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 등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직업능력개발 교육 및 훈련 지원
- 구인·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 지역일자리센터 운영
- 취업지원을 위한 지역축제 참가 및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 청년 취·창업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원

- 취업 취약계층 분야별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배부
- 기업,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의 시행, 지원

다. 관계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하여 규정함.

- 중앙행정기관, 타지자체, 전문기관·단체·기업 등과 협력하여 사업 수행 가능

라. 사업참여 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사업 참여 비영리 법인·단체에 대한 해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 가능

마.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

-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업무의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 가능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경제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도시건축과)

※ 전화 : 055-940-3371, 팩스 : 055-940-3349, 이메일:san115@korea.kr

※ 입법예고문 홈페이지 알림 :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례명 : 거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거창군 제 호

거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새로운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 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취업취약계층”이란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말한다.
4. “취업지원 사업”이란 구인·구직 고용 서비스 제공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취업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중소기업 고용 유지 지원 사업 등 고용촉진과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사업과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일자리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 등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직업능력개발 교육 및 훈련 지원
3. 구인·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4. 지역일자리센터 운영
5. 취업지원을 위한 지역축제 참가 및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6. 청년 취업 창업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원
7. 취업 취약계층 분야별 일자리 창출
8.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배부
9. 기업,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
10. 그 밖에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관계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일자리 창출 관련 전문기관·단체·기업 등(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단체 등”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사업참여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및 기업 등에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전망에 관한 조사·공표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에 필요한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산업·직업·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6.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생략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생략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10. 30.>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거창군 공고 제2018 - 1189호

『가조 살피재 굴곡도로 정비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거창군에서 시행하는『가조 살피재 굴곡도로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5일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가조 살피재 굴곡도로 정비공사

나. 위 치 : 경남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일원(지방도 1084호선)

다. 사 업 내 용 : 굴곡도로 선형개량 L=113.0m

라.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건설과 도로담당)

2. 보상내용

가. 토 지 : 경남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일원(붙임참조)

나. 지 장 물 : 편입토지에 지상에 있는 물건 일체

※ 토지 등 세부내역은 거창군청 건설과(도로담당)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 입법/공고/고시)에서 토지는 확인 가능함.

3.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8. 10. 5. ~ 2018. 10. 18.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 도로담당(☏ 055-940-3553)

다. 이의신청 방법 :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4. 보상금 협의 및 지급시기 :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보상시기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물건별 보상금액 및 구비서류 등은 손실보상 협의요청과 함께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

다. 보상방법 :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현금보상(계좌입금)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 협의 및 보상지급 ⇒ 수용재결(보상협의 불성립 시) ⇒ 공탁 및 수용

마.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창군청 건설과(하천담당)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로 갈음하며, 이해관계인은 권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 등 권리권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6. 기타사항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거창군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나. 보상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계획 및 열람 안내문 등을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 및 물건조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다.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편입면적(수량)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건설과 도로담당(☎055-940-35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조서(토지명세)

토지의 명세

연번	소재지	지번 (당초)	지목	현실 적인 이용 상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명 (명칭)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1필지			5,512	65		1인		
1	가조면 동례리	산284	임	임	5,512	65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길, 703호(서초동, 화원그랑빌아파트)	진평호		

붙임 이의신청서 1부. 끝.

이 의 신 청 서

① 사 업 명	가조 살피재 굴곡도로 정비공사			
② 사 업 위 치	경남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일원			
③ 사 업 시 행 자	거창군수(건설과 도로담당)			
④ 이 의 신 청 제 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⑤ 이의신청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 열람에 따른 조서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2018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거창군 공고 제2018 - 1195호

도 시 계 획 시 설(교통시설:소로 2 - 12호선) 실 시 계 획 인 가 를 위 한 공 고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12호선)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8. 10. 05.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 개요**

종류	명 칭	위 치		시 행 규 모						시 행 구 간	최 초 결정일	사업기간
		읍	리	구분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면 적 (㎡)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2-12호선)	거창	대동	소로	2	12	132.0	8.0	1,130	거창읍 대동리 10-50 ~ 거창읍 대동리 13-67	경고256호 ('77.04.25)	2018.10~ 2019.12.31

2. **사업 시행자** :

○ 사 업 명 : 대동리(소로2-1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번지(상림리 64-1번지) 거창군수

3. **사업 설계도** : 기재 생략

4. **열람 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소로 2-12호선

일련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7,855	1,130					
1	거창읍 대동리	10-50	도	2,423	14		거창군			
2	"	10-11 (10-63)	대	313	8	거창군 거창읍 동동4길 62	강경술			
3	"	13-51	전	151	151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4길24	강인섭			
4	"	10-64 (10-65)	전	767	280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4길24	장인숙			
5	"	10-70	전	253	253		거창군			
6	"	10-67	전	132	132		거창군			
7	"	10-69	전	74	74		거창군			
8	"	13-107	구	33	33		거창군			
9	"	10-42	도	3,584	97		거창군			
10	"	13-67	도	125	88		거창군			

6.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7. **의견제출 및 열람** : 위 공람 기간 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우편번호 : 670-870/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03(상림리 64-1번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이나 전화(055-940-3595), FAX(055-940-3579), E-mail : chanun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끝".

거창군 공고 제2018 - 1225호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공고

거창군 위천면 수승대체험마을의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마을홍보 사무장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년 10월 10일

거 창 군 수

1.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농촌체험휴양 마을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사무장

○ 근 무 지 : 위천면 수승대체험마을

○ 채용인원 : 1명

○ 채용기간 : 2018년 11월 1일 ~ 계약만료시까지

2. 담당업무

○ 마을체험 프로그램개발 운영활동 지도

○ 마을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관리운영

○ 회계·고객관리, 마을사무 관리, 주민교육

3.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 자격요건,직무수행에 관련된 자격과 경력 심사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검정

4. 채용자격 기준

○ 채용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상근직 근무가 가능하며 체험마을사무장의 주요 담당원활한 수행이 가능한 사람

○ 동일한 조건일 경우에는 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사 교육과정 이수자, 관광학과 졸업자 및 관련 직종 경험자, 농업인 자녀 등을 우선 채용

○ **거주지제한** : 접수일 현재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8. 10. 10.(수) ~ 2018. 10. 25(목) / 16일간

○ 접수처

- 접　　수 :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귀농귀촌담당
- 접수방법 : 응시지원서와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10. 25.(목)까지 접수
  ① 방문접수 : 농업기술센터 1층 귀농귀촌담당으로 제출 / 공휴일 제외
  ② 이메일접수: ninalee67@korea.kr / 공휴일 가능

6.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후 면접대상 통보 : 2018. 10. 26.(금) /개별 통보

○ 면접시험일시, 장소 : 2018. 10. 29.(월) 15:00 거창군농업기술센터

7. 제출서류

○ 채용지원사업 지원서, 직무수행 계획서 각 1부 / 붙임 서식

○ 사진 2매 : 지원서 제출전 6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를 응시원서에 붙임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학위 증명서 각 1부

○ 자기소개서 각 1부(A4용지 2매 분량이내 - 붙임서식)

○ 자격증, 수료증, 면허증 사본(원본지참)

○ 경력증명서(근무지별) 각 1부

8. 기타사항

○ 최종합격자 결정자가 합격등록 포기 시는 차 순위 자로 합격결정

○ 보 수 : 월 1,580천원

○ 기타 문의사항 : 위천 수승대체험휴양마을(010-4585-0632)로 문의
※채용에 관련한 사항은 귀농귀촌담당(055-940-8163)으로 문의바람

[별지 제1호 서식] <채용희망자용 : 앞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 지원서

①응시번호	신청자	②성 명 (한 자)		③주민등록 번 호	(만 세)	⑤사 진 (3.5㎝×4.5㎝)
	④최종 학력	학교(졸업,중퇴)				
⑥ 주 소						
⑦연 락 처		(자 택) (휴대폰)		⑧ 자격증		
⑨ 주요경력						
⑩병력관계				⑪거창군전입일		

본인은 응시자격에 적합할 뿐아니라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임명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명의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면서 2018년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절취선) ----------

응 시 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시험

⑫응시번호	⑬성명	(한글)		⑮사 진 (반명함판)
		(한자)		
	⑭생년월일	(만 세)		

붙임 : 마을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 1부

자 기 소 개 서

○ 주　　소 :
○ 성　　명 :

○ 내　　용

2018.　.

작성자 :　○○　○ (서명)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가족사항, 좌우명, 군복무, 학교생활 / 전공분야, 근무・연구활동 / 업적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채용희망자용 : 앞면>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

<table>
<tr><td>①신청자</td><td colspan="4">(성명) (생년월일)</td></tr>
<tr><td>②채용희망마을</td><td colspan="4"></td></tr>
<tr><td>③추진목표</td><td colspan="4"></td></tr>
<tr><td>④직무수행계획
개요</td><td colspan="4"></td></tr>
<tr><td>⑤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5">⑥직무수행계획</td><td>분기</td><td>담당업무</td><td>주요내용 및 계획</td><td>비고</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able>

이상과 같이 2018년도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사무장 지원사업의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채용희망자용 : 뒷면>

※ 작성요령

① 신청자 : 신청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

② 채용희망마을 : 채용희망마을의 주소 및 마을명을 기재

③ 추진목표 : 사무장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목표를 기재

④ 직무수행계획 개요 :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재

⑤ 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 : 사무장 직무수행시 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을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

* 담당업무(분야) 작성예 : 마을단위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체험활동 지도, 마을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관리・운영, 마을 종합관리시스템(RUCOS)내 마을자료 관리, 회계・고객 관리 등 마을사무관리, 마을축제 등 이벤트 기획・운영, 주민교육 등

⑥ 직무수행계획 :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을 월별로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추진일정, 추진방법, 추진전략 등을 명시)

*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